역동적 海의 부산

2015년도 부산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

2015. 07.

감 사 관 실

Audit & Inspection Office

목 차

Ⅰ. 감사개요 및 내역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

1. 청소용역비 국민연금보험 정산 소홀 ····· 2
2. 태종사 내 불법 가설건축물 등 관리 소홀 ····· 4
3. 광안대교 하이패스 추가 설치 등 업무 소홀 ····· 6
4. 벡스코 요금소 포장 개선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9
5. 다누비열차 추가 구입 관련 업무처리 소홀 ····· 11
6.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 14
7. 부서업무비 예산집행 절차 등 부적정 ····· 16
8. 어린이대공원 공유재산 관리 소홀 ····· 18
9. 자갈치시장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자관리 소홀 ····· 21
10. 어린이대공원 유지·관리 부적정 ····· 23
11. CCTV 개인영상정보 관리 소홀 ····· 25
12.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예산 집행 부적정 ····· 27
13. 직제운영 등 부적정 ····· 28
14. 소송비용 회수 소홀 ····· 30
15. 상조회 위탁 공유재산 운영부실 ····· 31
16.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33
17. 광안대교 무료통행증 관리 운영부실 ····· 36
18.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 징수 부적정 ····· 38
19.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해외견학 대상자 선정 등 적정 ····· 40
20. ◈◈◈ ◈◈◈◈◈◈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집행 부적정 ····· 43
21. 건강보험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 46
22. ◈◈◈◈ 주차장 조성공사 개발행위허가 미실시 ····· 48
23. 업무추진비 △·△△△ 관련 업무 소홀 ····· 50

2015년도 부산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부산광역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5. 5. 26. 부터 6. 5. 까지 부산시설공단의 2013. 6. 1.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관실에서는 지적사항 42건(본처분 23건)에 대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경고 조치하였으며,

○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산하 全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구분	행 정 상 (건)				재 정 상 (건/천원)				수범사례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감액	환부	
계	42	18	21	3	5 185,305	3 152,880	1/ 23,449	1/ 8,976	3건
본처분	23	13	8	2	4 161,856	3 152,880		1/ 8,976	
현지조치	19	5	13	1	1/ 23,449		1/ 23,449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청소용역비 국민연금보험 정산 소홀**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시　정
【재정상 조치】회　수
【지 적 내 용】

1.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1, 다.(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2.(정산절차),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0.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과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부산시설공단 재무회계팀에서는 2013년도, 2014년도의 △△△△ 등 9개 사업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후 정산하기 위하여 계약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계약대상자가 입찰공고에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정산을 못 하겠다 하여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계약대상자들이 국민연금보험료 제외 대상자(60세 이상자 등)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게 되었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2013년도, 2014년도의 △△△△ 등 9개 사업소의 청소용역 계약대상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계약대가를 지급 청구하여 수령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정산금액을 환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담당자가 계약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태종사 내 불법 가설건축물 등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불법 가설건축물(2009년 경 발생 추정)
- 구조/규모 : 판넬 및 앵글 / 50㎡
- 용　도 : 화초 모종 키우는 하우스(동절기 비닐 씌움)

○ 불법 시설물(2009년 경 발생 추정)
- 구조/규모 : 철재 트랠리스 / 넓이 2m, 길이 10m, 높이 2.8m

2. 내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 허가)제1항에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원상회복)제2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부산시설공단 태종대유원지사업소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태종대 유원지 내의 ○○○에서 토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가설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사용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에 불법 가설건축물 및 시설물 발생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유원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태종사 내의 상기 현황의 불법 가설건축물 등이 원상회복이 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영도구청에 의뢰하고, 앞으로 같은 불법 시설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광안대교 하이패스 추가 설치 등 업무 소홀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0조(입찰공고)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하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며,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① 하이패스 추가 설치 관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2015년도 벡스코 요금소 양방향 각 1개 차로에 하이패스 추가 설치 관련 『광안대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공고문 내용 중 입찰참가

자격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통행 징수기에 대한「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므로, 이 계약에 응찰을 하기 위한 자격으로 중소기업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에도, 당시 단독으로 입찰 및 재입찰에 응찰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인 ◎◎◎◎◎(주)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상기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체결함

② 하이패스 차로설비 용역 관리 등 소홀

- 2013 ~ 2015년도 현재까지 하이패스 유지관리 용역발주시 동일한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면서「광안대로 하이패스 차로설비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내용을 보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나, 연간 점검계획서를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았으며, 또한 동 계획에 따라 월별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받아 관련설비에 대한 이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용역업체에서는 월별 점검 항목을 점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시설공단에서는 용역업체의 월별 점검결과를 담당직원의 개인 메일로 통보받아 접수도 하지 않고 보관만 하였으며, 용역비 지급 시에는 분기별로 용역업체로부터 공문으로 제출 받았으나 해당 공문을 접수나 결재를 받지 않고, 재무회계팀으로 용역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며, 특히 연중 수차례 오작동 등 각종 장애발생시 긴급 수리를 정비하여야 하며, 장애접수 후 4시간이내 현장 도착하고 6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를 하고 긴급 복구 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하이패스 관련 현장오작동 등이 발생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시설공단 직원이 대부분 현장에 출동하여 수리 및 조치를 취하였으며, 오작동 발생내용·조치결과에 대한 발생일시·원인·수리내용·조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유지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하이패스 오작동 발생현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출동하지도 않았으며, 공단에서는 오작동 발생내용 등을 용역업체로 공문 통보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 시에는 입찰공고문상 참가 자격 기준 결정 후 해당 입찰 응찰자에 대한 참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적격자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시기 바라며,

○ 또한 「하이패스 차로설비 용역업무」 관리 시에는 해당 용역업체가 당초 계약시 과업지시서상 명시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벡스코 요금소 포장 개선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마」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 『건설기술진흥법』 제14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음에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및 『부산광역시 기술용역심의 규정』제2조(정의), 제3조(심의대상 등)등에 의하면 “신기술이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기술로서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하며, 적용범위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군(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해당되며, 도로포장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부산시설공단에서는 2013 ~ 2015년도까지 광안대로 벡스코 요금소 포장 개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 신기술 공법만을 적용하면서 신기술에 선정에 대한 적정한 기술심의 등의 절차 없이 총 3회에 걸쳐 전체 계약금액 997,459천원(2013년 404,502천원, 2014년 316,520천원, 276,437천원)을 임의로 자체 결정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이와 유사한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봉쇄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함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앞으로 각종 공사 등 발주 시 신기술을 해당공사에 적용할 시에는 사전에 기술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다누비열차 추가 구입 관련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0조(입찰공고)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하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하며,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

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제한하며,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금액)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율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①천재지면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④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관련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① 입찰 참가자격 과도한 제한

- 태종대유원지 다누비 순환열차(72인승) 추가 제작 관련 실적 등의 제한규모는 해당 목적물 규모의 1/3 정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다누비 순환열차의 당시 입찰 공고문상 참가자격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 등록증』

보유업체로 최근 10년 이내 탑승객 대인 96인승 이상 무궤도열차(유기기구) 완성차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 업체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계속 단독 응찰한 ㈜○○○○○○○ 업체에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② 계약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 다누비 순환열차 추가 제작 관련 계약기간이 당초 2013.10.24. ~ 2014.3.22. 까지 정해졌으나, 다누비 순환열차의 외장 디자인 용역이 제작업체인 ㈜○○○○○○○ 업체에서 자체 비용으로 적기에 완성되어야 함에도, 제작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디자인 용역 결정이 지체되어 적기에 용역완료가 되지 않아 다누비열차 납품이 사실상 6일 늦게 납품되어, 이에 대하여 시설공단에서 제작업체인 ㈜○○○○○○○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제작업체에서 계약기간 연장(9일간)을 요청한 것을 당시 시설공단에서 기간연장을 부당하게 승인해 주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③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 납부

- 태종대 유원지 다누비 순환열차를 2014.3.28.일자 납품받아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4.5.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 기한일(2014.5.30)에서 51일을 경과하여 2014.7.31일자로 해당 등록처인 영도구에 납부를 함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취득세 이외에 51일을 경과한 신고가산세 2,020,000원 및 지연납부 가산세 157,560원을 부당하게 납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물품 등 구입 관련 입찰시 참가자격 및 계약기간 연장승인 등 회계 및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물품납품 후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는 기한 내 해당기관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사무관리비 예산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 사업간 상호 이용할 수 없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의 정의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예산편성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여야 함

○ 세출예산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편성할 대상항목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세탁비, 기본 사무용품비,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TV·신문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심사수당, 일·숙직수당,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등의 임차료, 버스·승용차 임차료, 회의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임에도

- 부산시설공단(재무회계팀)에서는 2013 ~ 2015년도 5월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성격의『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미술의 거리 관광기념품 홍보 간담회, 서면 지하도상가 상인회 간담회, 시민공원 운영관련 간담회』등 총 120,278천원(2013년도 420건, 55,455천원, 2014년도 339건 44,431천원, 2015년도 133건, 20,39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지출 시에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정한 목적 외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의 예산집행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부서업무비 예산집행 절차 등 부적정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 부산시설공단 회계규정 제32조(증빙서류의 범위), 제33조(증빙서류의 구비조건), 제34조(증빙서류의 작성), 제5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58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의 작성), 제60조(지출결의서 작성) 등에 의하면 “회계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하며,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지출은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후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일상경비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부적정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자부)에 의하면 「관서 업무비」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기관 및 부서운영과 관련한 통상적인 경비로 「정원가산업무비」와 「부서업무비」에 각각 편성됨

○ 또한「부서업무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편성기준은 내부직제에 반영된 과·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운영 경비로서 각 부서단위로 편성하며, 월 지급액은 정원수에 따라서 5인 이하 100천원, 15인 이하 250천원, 30인 이하 350천원이며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에는 월 5천원이 추가되며,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 과, 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 부산시설공단(총무인사팀)에서는 부서업무비를 2013~2015년도 5월말까지 총 264,165천원(2013년 106,230천원, 2014년 111,030천원, 2015. 5월 46,905천원)을 매월 부서운영비로 부서별 100천원~450천 원 정도를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며, 부서운영비를 지급받은 부서에서는 사전품의 없이 매월 말 사후 품의와 법인카드로 지출증빙을 하고 있었으며, 총무인사팀에서는 각 부서 별로 매월 계좌 이체하여 지급한 이후, 각 부서별 부서운영비의 집행내용, 증빙서류 확인 및 정산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부서업무비 등 예산집행 시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지출 시에는 사전 품의 이행, 지출결의서 작성 등 회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어린이대공원 공유재산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어린이대공원 매점 등 영업실태

연번	시설명	대표자	영업장 면적 (㎡)	영업형태		
				영업시설	조리판매 식품	주류 종류
1	●●●●	☆☆☆	26	탁자 7, 의자 27	파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버섯전, 어묵탕, 오징어무침, 가오리무침	맥주, 탁주 소주
2	◎◎◎	○○○	26	탁자 2, 의자 11	도토리묵, 파전, 두부김치	맥주, 탁주 소주
3	△△△△	◎◎◎	26	탁자 6, 의자 33	버섯전, 도토리묵, 파전, 어묵	맥주, 탁주 소주
4	♤♤♤	♠♠♠	26	탁자 4, 의자 16	파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어묵탕	맥주, 탁주 소주
5	♡♡♡ ♡♡♡	▷▷▷	26	탁자 7, 의자 24	도토리묵, 파전, 두부김치	맥주, 탁주 소주
6	♧♧♧ ♧♧	▼▼▼	26	탁자 6, 의자 30	파전, 두부김치	맥주, 탁주 소주
7	◐◐◐◐	■■■	26	탁자 15, 의자 51	가오리찜, 도토리묵, 두부김치 해물버섯전, 파전, 국수	맥주, 탁주 소주
8	□□□ □□	♡♡♡	26	탁자 5, 의자 29 파라솔 6	파전, 오징어무침, 도토리묵, 두부김치, 가오리찜, 라면	맥주, 탁주 소주
9	☆☆☆☆	▣▣▣	26	탁자 8, 의자 47 파라솔 1	파전, 도토리묵, 온두부, 어묵탕, 가오리찜	맥주, 탁주 소주
10	◈◈◈ ◈◈◈	◉◉◉	26	탁자 7, 의자 22	파전, 오삼불고기, 동태찌개, 국수, 어묵탕, 두부김치, 우동, 도토리묵	맥주, 탁주 소주
11	◇◇◇ ◇◇◇	●●●	26	냉(온)장고 7 파라솔 1	커피, 슬러쉬	맥주, 탁주 소주

2. 내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조(관리), 제5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산광역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사용, 물품판매, 사진촬영, 그 밖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또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설공단 간에 체결한「공원·유원지 관리업무 위탁계약서(2006.9.1)」에 의하면 위 업무를 위탁받은 부산시설공단은 도시공원 및 유원지 내의 공유재산(토지·건물·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사용(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부과, 부정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무단 사용자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저장물의 이전·철거·원상회복 등을 촉구하고 고발조치를 하거나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대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부산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서는 어린이대공원 내 공유재산(매점)을 ○○○ 등 10명에게 2002.12.26~2017.12.25(15년)까지 기부채납조건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하고 관리상황을 조사하여 계약조건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주변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 내 파라솔 설치, 매점 내·외에 간이탁자 및 간이의자 비치, 도시공원 내에서는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매점 내 조리장을 설치하여 국수, 라면, 파전, 어묵 등 음식물 조리·판매 및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 ◇◇◇◇◇◇는 2013. 3월경부터 허가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 내에 냉장고 6대, 온장고 1대, 가스렌지 1대, 파라솔 1개를 불법 설치하여 커피, 슬러쉬, 주류 등을 순환도로변 노점에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철거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이미 2008년 부산시 종합감사 시 '어린이대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본처분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어린이대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공원 매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라솔, 의자・탁자・조리시설 등 허가 외 설비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시고,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업무관련 담당자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자갈치시장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자갈치시장 사용료 등 체납 현황 (단위 : 원)

업소명	임차인	면적 (㎡)	계약기간	이행 보증보험	체납액(VAT포함)		
					계	사용료	관리비
☆☆☆	○○○	4,309	2013.10.24 ~ 2016.10.23	481,431,507	307,714,540	91,150,810	216,563,730

2. 내 용

○ 부산시설공단「자갈치시장관리운영규정」제11조(허가취소), 제14조(관리비), 「자갈치시장관리운영규정시행내규」제17조(관리비 연체) 및「부산시설공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에 의하면 사용인은 자갈치시장을 사용함에 있어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을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을 초과한 관리비에 대하여는 최초 납부기한 이후 60일 이내에 사용인이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을 충당할 수 있으며, 또한 허가자(부산시설공단)는 사용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부산시설공단(자갈치시장사업소)에서는 ‘2013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시 자갈치시장 사용료 등 연체자 관리 소홀’로 이미 현지처분(주의)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위 ‘현황’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

용료 및 관리비가 307,714,540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사용인이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 회수 및 체납액 완납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의 경우 2013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업체(체납액 486,369,940원)로서 2013.10.2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체납된 사용료, 관리비, 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후 계약해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3.10.24 2차 갱신계약(2013.10.24～2016.10.23)을 체결하여 감사일(2015.6.4)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액(307,714,540원)이 발생하여 지급이행보증금(481,431,507원)을 활용한 회수 조치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에도 납부독촉 공문만 발송하는 등 자갈치시장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의 체납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자갈치시장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지급이행보증금 회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업무관련 담당자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어린이대공원 유지·관리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동물원 개요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개장일	사업시행자 (운영자)
동물원 및 가족유희시설 조성사업	-어린이대공원 : 4,830,530㎡ (동물원 : 85,334㎡)	80,339 백만원	2014.4.25.	주식회사 0000 (주식회사 00테마파크)

○ 동물원 구역 외 불법행위 개요

위 치	불법내용	불법일시	행위자	조치내용
초읍동000번지 등 10필지	-무단형질변경 100㎡ -조명시설 설치 53개 -놀이시설 2개소 50㎡	2014.4월~ 2014.5월	0000파크, 00테마파크	'15.5.12:고발등조치 지시(부산시) '15.5.15:부산진경찰서 고발

○ 동물원 구역 내 불법시설 개요

위 치	불법내용	불법일시	행위자	조치내용
초읍동 000번지 등 8필지	-미니놀이터 1개소 40.5㎡ -간이매점 증축 1개소 4㎡ -빙상장 1개소 318㎡ 등	2014.4월~ 2015.4월	00테마파크 등 4개사	'15.5.12:고발 등 조치 지시(부산시) '15.5.15:부산진경찰서 고발

○ 어린이대공원 내 (주)00파크에서 부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3-522호)를 득하여 동물원 및 가족유희시설사업 1단계사업을 완료 하고 '14.4.25일 개장하였으나 동물원 사업중 및 완료 이후에 무단형질변경과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2.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이하, “국계법” 이라함) 제64조(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국계법」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계법」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15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이 ‘06.9.1일 체결한「공원유원지 관리업무 위탁계약서」제2조(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공원·유원지안 유지관리 등의 업무는 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있음.

○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4.4월부터 설치된 동물원내·외 지역의 불법행위 및 불법시설물은「국계법」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득하여 설치되어야 하나 인·허가 등 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로서「국계법」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000뉴스 및 00뉴스에서 수차례 의혹 등을 제기하였고 민원인 고발이 있은 이후 현장 확인과 부산시의 고발조치지시를 받은 이후에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이행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로 사전에 불법시설물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사실과 장기간 불법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부산시 및 진구청에 보고되지 않는 등 공원 유지·관리에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향후 공원 내 불법행위 및 불법시설물 적발 시 관련 기관(부서)에 조속히 통보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CCTV 개인영상정보 관리 소홀
【기 관 명】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CCTV 개인영상정보 관리 현황

운영대수	개인영상정보 열람·제공 (2013. 6월 ~ 2015. 4월)			제공자료 파기미확인	비고
	계	열람	제공		
1,328	744	457	287	265	관리대장 미비치 6, 대장서식 부적정 10

2. 내 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5항,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및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제공, 파기, 열람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제3자 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그런데, 부산시설공단 소속 18개 부서에서 2013. 6월부터 2015. 4월까지 수사 등의 목적으로 경찰서 등 외부기관에 열람 457건, 제공 287건 등 총 744건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 및 제공하면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부서가 6개, 서식이 부적정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10개에 달하며, 또한 제공한 개인영상정보 287건 중에서 265건에 대해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유기간인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파기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부산시설공단 개인정보보호업무 총괄부서인 ◇팀에서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소속 부서들에 대해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외부기관에 제공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소속 부서 관련 담당자들이 그 파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업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업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구입 잔액 집행 현황

구매일	구매물품	단가	수량	금액	비고
2014.04.18	노트북 컴퓨터	1,627,000	5대	8,135,000	※ 예산내역(단위:천원) ○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 업무용PC 본체 40,000 - 업무용PC 모니터 12,800 外 13개 부서 총 142,300 ※ ■팀 일괄 집행
	노트북 컴퓨터	1,495,000	1대	1,495,000	
2014.04.26	전산교육장 PC 하드리스 시스템	7,086,640	1식	7,086,640	
2014.12.02	업무용 프린터	770,000	1대	770,000	
2014.12.12	IP 전화기	275,528	30식	8,265,840	
합 계				**25,752,480**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 낙찰 차액 등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연도말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여야 함.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물품, 비품 및 장비 등은 잔여예산 집행을 위한 구입은 지양하여야 함.

○ 그런데, 부산시설공단(■팀)에서는 업무용PC 본체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해 편성한 본사 및 13개부서의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예산 총 142,300천원을 2014년 3월에 일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은 '노트북 컴퓨터 구입' 등 4건의 사업에 총 25,752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관련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직제운영 등 부적정**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내 용

○「부산시설공단 직제규정」 제14조(정원)에 의하면 “정원외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자체 규정 등을 정하여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① 「○○○○○」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시설공단에서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2010.8.16.「전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을 운영하고 있음.

부산시설공단「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최초 「○○○○○」 채용시 ◇◇◇ 대상으로 적격여부만 실시 후 임용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4년 9개월간 계속 연임하여 근무중에 있음.

재임용(1년 단위) 시에는 관련 내규에 의거 1년간 직무실적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평가서 검토결과 구체적 직무실적이 없음

② ☆☆☆☆☆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시설공단「인사규정」 제4조(직종 등)에 근거를 두고 조경, 기획 전문분야 등의 ☆☆☆☆☆ 5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 운영 시 정원 외 인력으로 계약직에 준해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정규직과 동등한 4급 상당~8급 상당의 직급을 근거 없이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공채직원과의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③ 임원의 직무수행요건과 관련하여

「공기업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3장(임원의 인사)에 의하면 “공기업의 장은 당해 기관의 임원직위에 대해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고, 「부산시설 공단정관」 제12조에도 “공단임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따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임원의 역할, 책임, 직무수행요건, 복무 등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하시고, ☆☆☆☆☆의 직급은 직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 등에서 정한 직제순위는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조직진단 등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소송비용 회수 소홀**
【기 관 명】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회　수
【지 적 내 용】

1. 미회수 현황

연도	사 건 명	대상자	확정판결일	확정결정일	회수금액	비고
2012	① 건물인도 등(퇴거)	○○○○외 4	′13. 9. 6.	미청구	◇,◇◇◇천원	
2013	② 도로관리 소홀(손해배상)	☆☆☆ 외 2	′13. 9.12.	′14. 7.21.	▽,▽▽▽천원	
계					▲,▲▲▲천원	

2. 내　용

○ 부산시설공단「소송업무규정」제4장에 의하면 공단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설공단에서는 2012년 ‘건물인도 등’ 소송에서 2013.9.6.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구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천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 후 2014. 7.21.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천원에 대한 회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총 ▲,▲▲▲천원을 회수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 확정 판결 후 미회수 된 소송비용을 즉시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상조회 위탁 공유재산 운영부실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자판기 운용현황

(단위 : 천원)

운영주체	운영대수	위 치	수입금(14년)	대부료(14년)	계약주체	운영형태	비 고
상 조 회	커피 1 음료 1	중앙공원	85,539	39	상조회	직영	
○○벤더	커피 4 음료 6	지하철역 주차장6곳	11,640	없음	상조회	위탁	

2.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 시장이 법 제27조제1항에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항,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대상범위·기간·사용료와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동조례 제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조(사업),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서」** 제2조(위탁관리대상), 제9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시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을 주차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자의 관리·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공단의 **「재산관리규정」** 제25조(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자는 소관재산을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는 시설공단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10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자판기 운영을 허가 하여야 함에도 대부료 530,820원('15년: 116,910 ' 14년: 110,190 '13년: 105,870 ' 12년: 99,670 '11년: 98,180)도 부과하지 않고 설치되도록 하였고, 직원 상조회는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위탁할 수 있다는 허가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밴드에 위탁 운영하게 하고 자판기의 입찰을 위해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한 사실과, 계약당사자가 시설공단인 경우 낙찰자에게 지역개발공채 및 수입인지를 구입하게 하여야 하나 직원상조회와의 계약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부당하게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23만원), 수입인지(2만원)을 매입하게 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사용·수익허가 되지 않은 자판기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허가절차를 진행 후 미부과된 대부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고, 업무관련 담당자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공유재산 사용현황

(단위 : 천원)

수 탁 자	위탁(계약)기간	사용료 (14년기준)	면 적	허가용도	현황	비 고
▲▲상가상인회	2009.3.1.~현재	무상	101.87	고객불편신고센터	상인회사무실	수의계약
▼▼상가상인회	2009.10.1.~현재	무상	33.5	고객불편신고센터	상인회사무실	수의계약
★★★	2011.11.20~현재	986천원	1.2	휴지자판기	일반자판기	수의계약

2.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지하도상가 위·수탁협약서」** 제8조(수탁자의 의무)제1항 “을”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타시설·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고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적용)에서는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갑‘과”을“의 협의하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는 시장 등에 있는 빈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동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감면)제2항에서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 중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제3조(정의)제1호에서 "임대면적'이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하고, 동규정 제11조(임대료 등)제3항은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면적은 임대면적으로 한다. 제6항에서는 점포의 공실분에 대하여는 공익상 목적 및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제1항에서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라고 규정.

「고객불편 신고센터 및 수유실 사용허가 조건」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제1호에서 본래 사용의 목적이외로 사용·변경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가사업단에서는 (구)◎◎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로 사용되든 **◇◇지하상가** 상인회사무실을 일반사무실로 용도변경(2008.??.??. 부산광역시 ◆◆과-!!!)허가된 후 내부검토를 거쳐 상인회에 고객불편 신고센터 및 수유실을 운영한다고 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되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결과 상인회는 당초 허가조건이었든 고객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송실 등에는 방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이 상품 등을 비치한 창고로 사용하는 등 본래의 목적인 고객불편센터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인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과, **■■지하도상가** 상인회 사무실도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든 (구)멀티비전실을 고객불편신고센터로 변경하였으나 고객불편센터로 사용되지 않고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련부서에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

○ ◇◇ 및 ■■지하상가 상인회 사무실 인근 상가 월대부료(남포 ㎡당 12,000원, 광복 ㎡당 4,850원)를 상인회 사무실의 대부료로 적용할 경우 연간 16,618,980원(남포 14,669,280원, 광복은 1,949,700원) 손실이 발생하였다.

○ 또한, ◆◆지하상가에 설치된 휴지자판기 4대는 2011년9월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서상 휴지자판기로 감정하여 평가(금액 : 96천원, 108천원, 120천원 2대)를 받은 후 입찰공고 및 허가서류에는 휴지자판기를 위생용품자판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 허가하였고, 이후 2012년~2014년의 감정평가 및 허가서류 에서는 위생

용품자판기가 아닌 휴지자판기로 감정평가 및 허가를 받았음에도 위생용품자판기를 설치한 후 위생용품은 일부만 비치하고 일반물품인 초콜릿, 사탕, 캔디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시설공단이사장은 고객불편신고센터로 사용되지 않은 상인회사무실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무상으로 사용된 상인회 사무실 대부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한 후 조치. 또한 업무관련 담당자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광안대로 무료통행증 관리 운영부실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무료통행증 발급 현황

(단위 : 대)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적정	부적정	총계	적정	부적정	총계	적정	부적정	총계	
46	68	114	46	71	117	49	83	132	

2. 내 용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제1항 제1호에서는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사업단에서는 관련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 시설공단 ◉◉팀, ◎◎공단 등에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이라는 명목으로 1년 기간의 무료통행증을 발급하였고, 교량사업단내 ●●팀, ◐◐팀, ◑◑팀에는 각10장의 차량번호가 없는 무료통행권을 발급하는 등 3년간 총 222건의 무료통행권을 부당 발급하였으며, 2014.1.1~2015.4.30까지 광안대로를 통과한 유료도로

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으로 감면된 차량을 무료통행권 발급대장과 대사한 결과 등록되지 않은 총 288대의 차량이 1,415건 1,491천원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시설공단이사장은 부적정하게 발급된 무료통행증은 회수하여 주시고 등록되지 않은 무료통행차량은 조사 후 불법 통행사실이 확인되면 통행료 회수방안 마련, 업무관련 담당자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 징수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환 부

【지 적 내 용】

1. 현 황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 미감면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기간	화장장 사용료 미감면 현황		비고
		인원	금액	
화장장	2012.5월 ~ 2015.4월	○○	○,○○○	화장료 -일반인(대인) 120천원 -일반인(소인) 84천원 -지역주민 60천원

2. 내 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등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은 사망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인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사망한 자가 수급자인 경우이거나 국가유공자, 무연고자인 부랑인 및 노숙인인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자격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그런데도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여야 함에도 2012년 5월부터 2015. 4월까지 화장장 사용료 ○○명, ○,○○○천원을 감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영락공원사업단에서는 2011.10.28.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행정안전부)하여 2012.3.29.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가능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징수한 부당징수액은 환부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해외견학 대상자 선정 등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영락공원사업단)
【행정상 조치】 개 선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주민감시단		직원		참가인원		견학개요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주민감시단	직원	일정	지역
2011	30,000	29,850	12,000	9,709	12	3	'11. 3. 30~4. 6 (6박 8일)	이태리, 스위스
2012	30,000	29,928	11,260	11,260	12	3	'12. 3. 13~3. 22 (8박 10일)	스페인, 포르투칼
2013	36,000	35,620	10,000	10,000	13	3	'13. 3. 18~3. 26 (7박 9일)	미국 LA 등 서부지역
2014	36,000	35,840	10,000	8,017	14	3	'14. 3. 27~4. 2 (5박 7일)	태국, 미얀마
2015	36,000	35,800	10,000	9,263	13	3	'15. 3. 31~4. 7 (6박 8일)	영국, 프랑스

2. 내 용

○ 「지방공기업법」 제23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직영지방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Ⅳ.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08. 4. 10시행)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하며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해외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11.9.14.)에 의하면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

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설공단 공무국외여행 운영내규」(2013.11.14.제정) 제7조(심사내용 등), 제16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에 의하면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국외 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설공단에서는 국외공무여행 신청시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인이 매번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은 배제하는 등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귀국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외공무여행 관련자료를 공단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국외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그런데도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에서는

① 1998년부터 영락공원 주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매년 공무 국외여행에 대해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4년부터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감시단 해외 선진장사시설 견학을 추진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감시단 총 18명 중 8명이 5회 연속해서 이태리, 스페인, 미국, 태국, 영국 등 국외여행을 실시하였고,

② 2015년 선진묘지 견학(영국, 프랑스)에서는 장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당 주방장을 국외여행에 포함하였으며,

③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함에도 여행자 인원(12~14명)으로 볼 때 인솔직원은 1인이 적정함에도 매년 3명이 동행하였으며,

④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2013년에는 1인 견적서(△△△△ 여행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⑤ 2014년 국외 선진장사시설 견학(2014.3.27~4.2, 5박 7일, 태국, 미얀마)은 총 견학경비가 17명, 44,100천 원(주민감시단 14명 36,000천 원, 인솔직원 3명 8,100천 원)으로 1인당 평균 2,594천 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이는 여행지(태국, 미얀마) 및 여행기간(5박 7일)을 고려할 때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였으며,

⑥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공무여행 관련자료를 공단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국외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2014년 국외 선진장사시설 견학 (2014.3.27~4.2, 5박 7일, 태국, 미얀마)은 등록 마감기간(2014.5.2.)이 68일

경과한 2014.7.10.에 공단 홈페이지에 지연등록, 행정안전부 국외연수 정보시스템에는 미등록 하였으며, 2015년 국외 선진장사시설 견학(2015.3.31~4.7, 6박 8일, 영국, 프랑스)은 등록 마감기간(2015.5.7.)이 경과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국외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사업무와 관련하여 공무 국외여행 시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시고 여행인원 축소 및 격년제 시행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 ◈◈◈◈◈◈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집행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용역으로 ◈◈◈◈ 실시한 시설물 현황
▹ 붙임 현황 참조

2. 내 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4조,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로 만들어진 제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시설물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도록 되어 있다

○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실시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아래 표의 주기와 같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 안전점검 실시주기

구 분 /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시설물	
A	반기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6년에 1회이상
B·C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D·E	1년에 3회이상	2년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에 대해 준공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 이내 1회 실시하고 등급별 주기에 맞춰 실시

○ 또한 시특법 시행령 제7조[별표2]와 시특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시설공단에서는 감사일 현재 건축물중 1종 시설물(3개소-◎◎상가), 2종 시설물(2개소-◎◎◎시장, ◎◎회관)을 3명의 담당자(건축)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 따라서, 자격을 갖춘자가 소정의 안전점검교육을 받으면 소관시설물의 안전(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안전점검교육 이수자가 없다는 사유로 2013~2015년 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 자격증 관련 보유자가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용역으로 안전(정기)점검 실시한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명	시설물 종류/등급	점검기간	용역금액(원)	점검기관	비고
2013	상반기	○○지하도상가	1종 / B	13.03.21~13.03.28	1,879,500	㈜□□□□ 안전연구소	
		○○지하도상가	1종 / B	13.03.21~13.03.28	1,879,500	㈜□□□□ 안전연구소	
		○○지하도상가	1종 / B	13.03.21~13.03.28	1,611,000	㈜□□□□ 안전연구소	
		○○○시장	2종 / A	13.04.10~13.04.29	6,110,000	㈜□□□□ 안전연구소	정밀점검으로 대체
		○○회관	2종 / B	13.06.12~13.06.26	2,640,000	㈜□□□□ 안전연구소	
	하반기	○○지하도상가	1종 / B	13.11.23~13.12.09	1,876,000	㈜□□□□ 구조진단	
		○○지하도상가	1종 / B	13.11.23~13.12.09	1,876,000	㈜□□□□ 구조진단	
		○○지하도상가	1종 / B	13.11.23~13.12.09	1,608,000	㈜□□□□ 구조진단	
		○○○시장	2종 / A	13.11.29~13.12.16	2,330,000	㈜□□□□ 구조진단	
		○○회관	2종 / B	13.11.25~13.12.14	2,640,000	㈜□□□□ 안전연구소	
계					**24,450,000**		
2014	상반기	○○지하도상가	1종 / B	14.05.26~14.06.09	1,878,800	㈜□□□□ 구조진단	
		○○지하도상가	1종 / B	14.05.26~14.06.09	1,878,800	㈜□□□□ 구조진단	
		○○지하도상가	1종 / B	14.05.26~14.06.09	1,610,400	㈜□□□□ 구조진단	
		○○○시장	2종 / A	14.3.18~14.04.01	2,376,000	㈜□□□□ 안전연구소	
		○○회관	2종 / B	14.06.25~14.07.15	2,684,000	㈜□구조진단 기술사무소	
	하반기	○○지하도상가	1종 / B	14.09.23~14.11.27	2,000,000	□ 엔지니어링	
		○○지하도상가	1종 / B	14.09.23~14.11.27	2,000,000	□ 엔지니어링	
		○○지하도상가	1종 / B	14.09.23~14.11.27	11,851,470	□ 엔지니어링	정밀점검으로 대체
		○○○시장	2종 / A	14.11.28~14.12.15	2,376,000	㈜□□□□ 구조진단	
		○○회관	2종 / B	14.11.20~14.12.24	8,360,000	㈜□□구조 안전기술	대극장 2층객석 트러스 정밀안전 진단 포함
계					**37,015,470**		
2015	상반기	○○지하도상가	1종 / B	15.04.13~15.05.12	1,890,000	㈜□□□□ 안전연구소	
		○○지하도상가	1종 / B	15.04.13~15.05.12	1,890,000	㈜□□□□ 안전연구소	
		○○지하도상가	1종 / B	15.4.14~15.4.24	1,760,000	㈜□□□□ 구조진단	
		○○○시장	2종 / A	발	주	예	정
		○○회관	2종 / B	15.5.12~15.06.12	3,300,000	㈜□□구조 안전기술	일부벽체 구조검토 포함
계					**8,840,000**		
정기점검					**43,984,000**		**2,094,000원/회**
총 계					**70,305,47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강보험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회 수
【지 적 내 용】

1. 현 황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사업장 현황

(단위:천원)

연번	공사명	사업규모	계약자	계약기간	비 고
1	■■■■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면적 2,172.40㎡, 연면적 3,697.63㎡, 지상3층4단	㈀㈀합건설(주) 대표 ○○○	2014.07.01. ~ 2015.01.26.	건강,연금 노인,퇴직
2	■■■■■■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부지면적 496㎡, 연면적 374.1㎡, 지상2층	㈀㈀㈀㈀건설(주) 대표 ○○○, ㈜㈀㈀㈀㈀ 대표 ○○○	2014.07.25. ~ 2014.12.26.	건강,연금 노인
3	■■■■■■ 5호 화장실 건축공사	부지면적 350㎡, 연면적 65.37㎡ 지상1층	㈜㈀㈀건설 대표 ○○○	2013.12.04. ~ 2014.04.26.	건강,연금 노인
4	■■■■■■ 제7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411면(13,416㎡)	㈀㈀건설주식회사 대표 ○○○	2013.12.31. ~ 2014.05.09.	퇴직공제
5	■■■■■■ 관리사무실 신축공사	부지면적 1,700㎡, 연면적 647.89㎡, 지상3층	㈀㈀종합건설(주) 대표 ○○○, ○○○ ㈜㈀㈀설비 대표 ○○○	2013.06.13. ~ 2014.04.12.	건강,연금 노인
6	■■■■■■ 관리사무실 부대 시설 증축공사	부지면적 1,700㎡, 연면적 203.4㎡, 지상2층	㈜㈀㈀설비 대표 ○○○	2014.02.25. ~ 2014.09.19.	건강,연금 노인
합계					

2. 내 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상),「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격 작성기준」(행정자치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등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연금보험 등 각종 보험을 포함하여 예장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명시 및 정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공사계약일반 조건」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1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의 의거 계약담당자는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후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의 안에서 정산 하여야 한다.

○ 또한,「공사계약 일반조건」제8절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해당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 금액으로, 상용근로자는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등 현장관리 인건비는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보험료 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는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시설공단 에서는 붙임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부적정 사업장 현황과 같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등 간접노무비 대상이 포함된 납부확인서를 시공자가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확인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인 ㈜㈀㈀종합건설 대표 ○○○외 4인에게 ○○,○○○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 공단이사장은 준공 정산시 과다 지급된 건강보험료 등을 회수 처리하시 바라며,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여 업무추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차장 조성공사 개발행위허가 미실시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 **주차장 조성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 고
◎◎◎◎ 주자창 조성공사	부지면적:2,172.4㎡ 3층4단, 철골조 연면적:3,697.63㎡ 주차면수:140면	◍◍종합건설(주) 대표 ○○○	1,975,435 (관급:187,220) 총사업비:25억 (주차장 특별회계)	2014.06.27 ~ 2015.01.26	

○ 시설공단(◎◎◎◎)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접지역(▤구 ▧▧동-고가도로 하부)에 ◍◍종합건설(주) 대표 ○○○과 계약 체결하여 2014.06.27.부터 2015.01.26.까지『시민회관 주차장 조성공사』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하였다

2. 내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64조(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도로법” 등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 「도로법」제27조(행위제한 등), 시행령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또한「국토계획법」제43조(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시설결정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군 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시설공단(◎◎◎◎)에서는 동서고가도로 하부 부지(□□동 △△△번지 외 19필지-도로결정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면서「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표1 참조)만 득하고 개발행위허가(공작물의 설치 등)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도로점용허가 현황

허가번호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비고
☒구 2014-03-08	□□동 △△△번지 등 20개 필지	2,174.4㎡	주차장 (공작물설치)	2013.12.09. ~ 2022.12.31	

3.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미 이행된 개발행위허가(공작물의 설치 등)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여 업무추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 부산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 업무추진비 축·부의금 사용 현황

구　　분	2013년～2015년	
	건 수	금 액(원)
☆·★★ ◎◎ 내역	34	2,850,000

※ 업무추진비 축·부의금 세부내역 : 『붙임』

2. 내 용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및「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격려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의「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부산 시설공단 ◇◇◇◇◇에서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타기관의 부서 ◆◆에게 ☆·☆☆☆으로 ▼▼집행을 하였으며(34건, 2,850천원), 간담회 명목으로 내부품의 결재를 득해놓고 다른 날 사용하는 등(9건, 2,624천원), 2013년 6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부산시설공단이사장은,「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규칙해설」에 따라 집행하시고,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기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제하시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